

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72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2. 21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2. 22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2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농어촌정비법의 제정으로 용어의 정리(안 제1조, 제2조)
나. 사업비의 부과 등 삭제(안 제12조)
다. 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변경(안 제20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어 구법에서 사용한 용어를 새로 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사업비의 부과, 권리변동, 신고의무 등의 내용을 신법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
- 다만, 안 제12조(사업비의 부과등) 삭제시 사업시행 비용충당에 필요한 경비부과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며
- 또한 동 조례를 정비하면서 용어 및 자구수정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2000. 12. 2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